

##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

이 용 호\*\*

### < 목 차 >

- I. 서언
- II. ‘핵무기금지조약’의 성립 배경
- III. ‘핵무기금지조약’의 주요 내용
- IV. ‘핵무기금지조약’의 한계
- V. 결론

### I. 서언

1945년 7월 16일 원자탄(Atomic Bomb) 실험의 성공은 제2차 세계대전을 조기에 종결짓는 한 요인이 되었음과 동시에, 인류에게 거대한 재앙을 예고하는 하나의 출발점이었다. 동년 8월 6일과 9일에 각각 사용되어진 원자탄은 그 가공할만한 위력으로 인해, 국제사회를 핵군비경쟁의 시대로 끌어들이었다. 수많은 핵실험과 핵무기의 확산 및 운반체(미사일)의 발달 등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수사였다.

핵군비경쟁시대의 파생물은 실로 엄청났다. 2,058회의 핵실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 9개 국가가 핵무기를 제조하였으며, 그들이 보유한 핵탄두의 총 수가 한 때 약 69,000개에 달하기도 하였다. 실로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인적·자연적 환경의 훼손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195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통제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출발은 핵실험의 통제 영역이었다. 그

\* 이 연구는 2016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 핵무기 확산의 방지, 비핵지대의 설치, 핵무기의 실질적 감축, 핵무기 사용의 규제, 핵물질과 미사일의 규제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동시에 원자력에 대한 정보와 그 위험성을 알리려는 대중운동도 원자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특히 1952년 미국의 수소탄의 실험성공은 핵군축 문제를 국제사회의 일반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1863년)를 비롯한 그린피스(Greenpeace, 1971년)·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1980년)·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2007년) 등 다수의 비정부간기구(NGO)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지금까지 25개의 핵군축조약(14개의 다자조약 및 11개의 양자조약)이 체결되었다.<sup>1)</sup> 이 가운데 특히 2017년의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은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핵무기금지조약’은 그간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발달해 온 핵군축 노력을 하나로 묶어낸 것으로서, 핵무기 영역에서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인도주의의 승리’에 대한 징표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희망과 꿈인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국제공동체의 열망에 부응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9년 현재까지 ‘핵무기금지조약’이 미발효 상태에 있다는 점과 9개의 핵무기보유국 모두가 동 조약의 협상과정에서부터 불참하였다는 점 등은 동 조약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서, 향후 동 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분석을 통해 향후 동 조약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 하에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동 조약의 성립 배경을 기술하고자 한다. 둘째 동 조

1) 대표적인 핵군축조약으로서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핵무기비확산조약·라틴아메리카핵무기금지조약·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핵무기금지조약’ 등의 다자조약 및 INF조약·START I·START II·SORT·New START 등의 미국과 구소련(또는 러시아) 간의 양자조약을 그 예로 들 수 있다(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19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 Press, 2019, pp.554~586).

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동 조약이 안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동 조약의 나아갈 방향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II. ‘핵무기금지조약’의 성립 배경

### 1. ‘인도주의적 약속’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은 그 당시 국제사회가 핵군축의 궁극적 목표를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general and completely disarmament)의 실현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군사·전략적 가치로 인해, 포괄적인 핵군축의 달성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룰 수 없음을 인식한 국제사회가 1950년대 후반부터는 부분적 핵군축으로 그 입장을 전환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1959년의 ‘남극조약’을 필두로 25개에 이르는 개별적인 핵군축조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보유국의 수가 증가하였고,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이 예측되었고, 특히 핵무기가 사이버전이라는 개념과 결합하는 가설에까지 이르게 되면, 핵무기를 둘러싼 우려는 거의 재앙의 수준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증가된 위협에 직면하여, 국제사회는 또다시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 당위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당위로부터 채택된 것이 바로 ‘핵무기금지조약’이다. 동 조약의 채택이 다수의 핵무기비보유국을 포함한 각종 비정부간기구(NGO)의 헌신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핵무기금지조약’의 출발을 2010년에 개최된 ‘핵무기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의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의 최종문서(final document)에서 구하기도 하는데,<sup>2)</sup> 즉 동 최종문서에서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2) 2010년의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재검토회의는 2000년 5월 3일부터 28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었는데, 172개 당사국이 참석하였다. 동 재검토회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헌에 잘 기술되어 있다(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핵무기의 사용이 가져올 인도적 대제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줄 것’ 및 ‘적용 가능한 국제법(국제인도법을 포함한)이 항상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이 바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행동을 취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다.<sup>3)</sup>

그 후 국가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관한 정부 간 국제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가 3차례 개최되었는데,<sup>4)</sup> 마지막 회의에서 오스트리아는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를 위한 법적 흠결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것’ 및 ‘핵무기의 위험에 비추어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약속은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를 위한 인도주의적 약속’(the Humanitarian Pledge for the Prohibition and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으로서 국제화되었고, 그것은 2015년 12월 7일에 ‘유엔총회 결의 70/48’로서 채택되었다.<sup>5)</sup>

## 2. ‘개방실무그룹’과 ‘제1위원회’(First Committee)

상기의 ‘인도주의적 약속’과는 별개로, 유엔총회는 다자적 핵군축협상의 진전을 위하여 ‘개방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을 설치하였다. 동 실무그룹은 2016년 2월과 5월 및 8월에 제네바에서 각각 회합을 열었는데, 동 회합에는 핵무기비보유국들만이 참석하였다.<sup>6)</sup>

‘개방실무그룹’을 회합에서 참가국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통제할 것 인지를 둘러싸고 명백한 이견을 보였다.<sup>7)</sup>

---

2011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 Press, 2011, pp.375~381).

3) Shannon N. Kil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SIPRI Yearbook 2018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 Press, 2018, pp.307~308.

4) 동 국제회의는 2013년 3월 4~5일 127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슬로에서, 2014년 2월 13~14일 14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의 나야리트(Nayarit)에서 그리고 동년 12월 8~9일 15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엔나에서 각각 열렸다(Stuart Casey-Masle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 A Commentary*, Oxford Univ. Press, 2019, p.47).

5) Shannon N. Kile, *op.cit.*, p.308.

6) *Ibid.*, pp.308~309.

7) 상기 ‘개방실무그룹’에서 나타난 핵무기의 통제 유형은 아래와 같은 4가지인데, 그 핵심은

대부분의 핵무기비보유국들은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의 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특히 2016년 5월의 회합에서, 10개의 핵무기비보유국은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2017년부터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워킹페이퍼(working paper)를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무기비보유 회원국 및 일본·오스트레일리아·한국 등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국가들은 상기의 핵무기비보유국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즉 그들은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를 둘러싼 논의에서 점진적 접근방법을 선호하였던 것이다.<sup>8)</sup>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개방실무그룹’은 2016년 8월의 세 번째 회합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유엔총회로 하여금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채택을 위한 회의를 2017년에 소집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sup>9)</sup>

또한 유엔총회 산하의 ‘제1위원회’(First Committee)는, 자신의 2016년 회기에서,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채택을 위해 2017년에도 계속해서 협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 71/258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찬성 113, 반대 35, 기권 13으로 채택되었는데, 동 결의에 반대한 대표적 국가는 영국·프랑스·미국 등이었다.<sup>10)</sup>

상기 ‘제1위원회’의 결의 71/258은 유엔총회로 이송되었고, 그것은 2016년 12월 23일 유엔총회 결의71/258로 채택되었다. 동 결의에는 9개 핵무기보유국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게 찬성하였고, 중국·인도·파키스탄이 기권을, 프랑스·이스라엘·러시아·영국·미국이 반대하였다. 기타 국가로서 그 결의에 반대한

아래와 같다. ①처음부터 핵무기보유국 모두가 참여하며, 검증과 사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내포되어 있는 형태로서,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를 규정하는 포괄적 핵무기금지조약, ②모든 당사국에게 기본적 금지와 의무를 부담시키고는 있지만, 현존 핵무기의 폐기 또는 검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치적 선언의 형태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핵무기금지조약, ③기본적인 금지규정을 두면서도,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해서는 추후의 협상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조약, ④점진적 접근방법으로서, 최소한의 지점에 도달한 후, 현존하는 핵군축·비확산·안전보장에 관한 약정 내지 협정에 추가해서, 포괄적 핵군축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뢰구축조치뿐 아니라 법적 및 비법적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 등이다(*Ibid.*, p.309).

8) *Ibid.*, pp.309~310.

9) 동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taking forward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이다(*Ibid.*, p.310).

10) 영국·프랑스·미국 등 3국은 핵무기의 금지를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Ibid.*, pp.310~311).

국가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 받는 호주·일본·한국 등이었다.<sup>11)</sup>

### 3. 2017년의 유엔외교회의

상기 유엔총회 결의71/258과 상기 ‘개방실무그룹’의 최종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의 채택을 위한 유엔외교회의가 2017년에도 계속되었다.

먼저 2017년 3월에 개최될 유엔외교회의에 앞서, 2017년 2월 16일 뉴욕에서 100개국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회의(preparatory organizational meeting)가 열렸다. 동 준비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코스타리카의 Elayne Whyte Gómez대사를 ‘조약의 협상을 위한 2017년 유엔외교회의’의 의장으로 그리고 Thomas Markram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sup>12)</sup> 또한 동 준비회의에서는 유엔외교회의의 제1차 회기에서 논의할 잠정적 의제와 동 외교회의에서 적용될 절차적 규칙에 합의하였다.<sup>13)</sup>

이러한 준비회의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7년의 유엔외교회의의 제1차 회기가 2017년 3월 27-31일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130개국 이상의 핵무기비보유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반면 9개 핵무기보유국 모두는 불참하였고,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핵무기비보유국 가운데는 네덜란드만이 유일하게 참석하였다.<sup>14)</sup>

동 제1차 회기에서의 주요 논점은 앞으로 체결되어질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에 관한 조약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였다.<sup>15)</sup>

그러나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에 관한 조약의 기본적 금지의 범위를 둘러싸

---

11) *Ibid.*

12) Stuart Casey-Maslen, *op.cit.*, p.48.

13) 절차적 규칙이란 중요문제에 있어서는 2/3 다수결,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단순과반수를 요구하는 유엔총회의 절차적 규칙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단일 국가나 또는 소수의 국가가 동 회의에서의 결정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Shannon N. Kile, *op.cit.*, p.311).

14) 미국은 2016년 10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보낸 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에 대한 협상 및 핵억지정책을 흔드는 행위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억지정책과 기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천명해 왔다. 아울러 미국은 그러한 조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다(*Ibid.*).

15) *Ibid.*

고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었다. 첫째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불일치가 있었다. 모든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의 위협’의 금지라는 내용을 그 조약의 본문에 담는다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무기비보유 회원국들이 그러한 내용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참가국들의 영해를 통한 핵무기의 통과(수송)을 금지하는 내용도 상기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그 조약의 본문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셋째 참여국들은 그 조약에 핵실험의 금지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도 이견이 있었다. 즉 일부 국가는 그 조약에 핵실험의 금지의무를 포함하게 되면, 그 조약상의 핵실험의 금지가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상의 핵실험의 금지와 충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sup>16)</sup>

그 밖에도 참가국들은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에 관한 조약이 핵무기비확산조약상의 검증체제 이외에, 추가적이고 독자적인 검증체제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또한 장래에 핵무기보유국이 그 조약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핵무기보유국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 지를 둘러싸고도 불일치가 있었다.<sup>17)</sup>

이상과 같은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유엔외교회의의 참가국들은 핵무기의 비소유와 비사용에 관한 규정을 상대적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는 점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상세한 법적 또는 기술적 조치에 관해서는 추후의 협상에 남겨두기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에 관한 첫 번째 조약 초안에 대한 합의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sup>18)</sup>

#### 4. ‘핵무기금지조약’의 탄생

2017년 5월 22일 유엔외교회의의 Elayne Whyte Gómez의장은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를 위한 첫 번째 조약 초안을 각 참가국에게 회람하였다. 동 초안의 작성에

---

16) *Ibid.*, p.312.

17) *Ibid.*

18) 반면 이란과 이집트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광범위한 금지와 검증 규정까지 갖춘 더 포괄적 금지를 담은 조약의 체결에 관심을 표명하였다(*Ibid.*).

적용된 4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상호 보완성’(complementarity)이다. 동 초안은 현존하는 핵비확산체제를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핵비확산체제 특히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보강성’(reinforcement)이다. 동 초안은 현존하는 비확산규범을 회피하려는 일부 국가에게 그 ‘빠져 나갈 구멍’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단순성 및 비차별성’(simple and non-discriminatory nature)이다. 동 초안은 단순명료하며, 비차별적이며 그리고 핵무기의 명백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미래에 대한 고려’(a basis for the future)이다. 동 초안은 유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장래 핵무장국가의 가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9)</sup>

상기의 첫 번째 조약 초안은 2017년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린 ‘유엔 외교회의 제2차 회기’(공휴일을 제외한 15일 회기)의 기초로서 제공되었다. 많은 논의를 거친 후, 동년 6월 27일 ‘핵무기 금지에 관한 조약 초안’이라고 명명된 두 번째 조약 초안이 공표되었고, 이어서 7월 3일에는 세 번째 조약 초안이 공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동년 7월 6일 조약의 최종 초안이 공표되었다.<sup>20)</sup>

2017년 7월 7일 Elayne Whyte Gómez의장은 핵무기 금지에 관한 조약의 최종 초안을 유엔외교회의에 제출하였다. 동 외교회의에서 참가국(총 129개국 등록)들은 찬성 122개국, 반대 1개국(네덜란드), 기권 1개국(싱가포르)으로 동 조약의 최종 초안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은 2017년 9월 20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50명 이상의 국가원수와 정부수반 및 외교장관이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동 조약은 50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된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하게 된다.<sup>21)</sup>

19) Stuart Casey-Maslen, *op.cit.*, pp.49~50.

20) *Ibid.*, pp.50~51.

21) *Ibid.*, p.51 ; Shannon N. Kile, *op.cit.*, p.314.

### III. ‘핵무기금지조약’의 주요 내용

#### 1. 초안과의 관계

‘핵무기금지조약’의 첫 번째 조약 초안에서는 동 조약의 기본적 의무를 동 조약 초안 제1조에 담고 있었는데, 즉 모든 당사국에게 핵무기의 보유·개발·생산·양도 및 사용을 금지하고,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며, 핵무기를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sup>22)</sup>

이처럼 동 조약 초안 제1조 1항 a호에서는 ‘핵무기의 보유·개발·생산·양도 및 사용을 금지’하고,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동 조약 초안 제1조 1항 e호에서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어떠한 핵무기 실험폭발 또는 기타 핵폭발의 수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호’를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조약 초안부터는 상기 e호가 삭제되고, 동 조약 초안 제1조 1항 a호의 내용 속에 ‘실험’(test)이라는 용어를 추가로 삽입하는 형태로 대체되었던 것이다.<sup>23)</sup>

또한 조약 초안들의 협상 과정에서 쿠바와 이란은 핵무기를 통한 자금조달행위와 핵무기의 통과(수송)를 금지할 것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이것 역시 ‘핵무기금지조약’에 포함되지 못하였다.<sup>24)</sup>

특히 두 번째 조약 초안부터 가장 논쟁거리였던 것 가운데 하나는, 민수용의 핵물질과 시설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안전조치(safeguards)와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논의되었다. 예컨대 스웨덴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국가들은 ‘핵무기금지조약’의 각 당사국에게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협상할 때 ‘강화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추가의정서’에 대한 협상까지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그러한 강화된 안전조치의 적용에 반대하였다.<sup>25)</sup>

---

22) *Ibid.*, p.313.

23) Stuart Casey-Maslen, *op.cit.*, p.143.

24) Shannon N. Kile, *op.cit.*, p.313.

25) *Ibid.*

## 2. ‘핵무기금지조약’의 핵심적 논점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은 핵무기의 통제를 둘러싼 핵무기비보유국과 핵무기보유국(그 동맹국 포함) 간의 입장차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즉 많은 핵무기비보유국들은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동 조약의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핵무기보유국과 그 동맹국들은 동 조약의 채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래에서는 동 조약에 찬성하는 국가들의 입장과 반대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1) ‘핵무기금지조약’의 찬성 측의 주장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4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핵무기를 불법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윤리적이고 인도주의적 급박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2013-2014년의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관한 정부 간 국제회의’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비인도주의적이고 무차별적이며, 특별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핵무기금지조약’의 전문에서는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인도성의 원칙과 공공양심의 명령에 반한다는 점 및 핵무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금지가 ‘핵무기 없는 세상’의 성취와 유지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둘째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비확산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한 핵군축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핵무기비보유국들은 자신들의 점증하는 분노를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핵무기비보유국들은 2000년과 2010년에 개최된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재검토회의’에서 합의된 핵군축의무를 핵무기보유국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실망감을 가졌으며, 이러한 점이 많은 핵무기비보유국들로 하여금 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와는 별개로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sup>27)</sup>

---

26) *Ibid.*, p.315.

27) *Ibid.*

셋째 ‘핵무기금지조약’이 국제군축법상의 시급한 흠결을 메우는데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생물·화학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의 요구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금지하는 조약이 채택된 것과 같이, 훨씬 더 파괴적이고 비인도주의적 영향을 끼치는 핵무기는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을 금지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28)</sup>

넷째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핵억지정책 등의 핵무기와 관련한 정치적 담론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 하에서는 핵무기와 ‘핵억지의 관행’을 어떻게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핵무기가 국제사회에 제공한 안보이익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안보이익으로부터 탈피하여 인도주의와 도덕적 급박성에 기초한 정치적 및 외교적 고려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sup>29)</sup>

## 2) ‘핵무기금지조약’의 반대 측 주장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핵무기의 금지가 불필요하며, 비현실적이며, 그리고 다자간 핵군축 노력에 잠재적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 반대 측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핵무기비확산조약이 핵군축의 진전에 충분한 법적 기초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관습국제법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에 관한 범규범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법적 흠결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을 반대한다는 것이다.<sup>30)</sup>

둘째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가 오히려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은 비현실적인 핵군축조치이며 현명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히려 동 조약의 채택이 핵군축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sup>31)</sup>

---

28) *Ibid.*

29) *Ibid.*, p.316.

30) *Ibid.*

셋째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을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핵무기금지조약’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하거나 또는 핵무기비확산조약상의 핵군축의무의 이행을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sup>32)</sup>

넷째 ‘핵무기금지조약’이 현존하는 핵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예컨대 핵무기의 통제가, 만약 선택적 구조로 나타난다면, 포럼쇼핑(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관할권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개개 국가들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핵군축조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핵비확산체제는 지금보다 더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sup>33)</sup>

### 3. 주요 내용

‘핵무기금지조약’은 전문과 20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주요 원칙과 기본 의무 및 기타 의무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주요 원칙

‘핵무기금지조약’은 24개의 항으로 구성된 전문을 두고 있다. 동 전문에는 참가국들이 동 조약을 채택한 동기와 근거 및 핵무기가 가져 올 해악에 관한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당사국들의 행동을 이끌 법적·인도주의적·정치적 원칙과 실제적 국제법규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sup>34)</sup>

동 전문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는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31)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치가 국제적 안보환경과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 및 현재의 안보 doktrin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미국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즉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핵무기의 정당성을 깎아 내리는 노력이, 결국 국제적 안보구조와 지역적 안보약속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Ibid.*, pp.316~317).

32) *Ibid.*, p.317.

33) *Ibid.*

34) 반면 동 전문에서는 ‘기타 핵폭발장치’에 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는데, 이는 ‘핵무기금지조약’의 본문에서 ‘핵무기’와 ‘기타 핵폭발장치’를 나란히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겠다(*Stuart Casey-Maslen, op.cit.*, p.64).

반함을 고려하면서”라고 기술하고 있는 제10항이었다. 물론 동 제10항이 1996년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핵무기 사용과 그 위협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sup>35)</sup> 나온 결정을 반복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핵무기금지조약’에서 다시 재확인된 점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의 전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①유엔 헌장의 목표와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1항)

②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인도주의적 재앙에 유의하면서,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유일한 방안이 바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2항)

③핵무기의 계속된 위협을 인지하고, 핵무기의 사용을 방지해야 할 책무의 강조(3항)

④핵무기가 야기하는 재앙적 결과가 인간생존, 환경, 사회경제적 개발, 글로벌 경제, 식량안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 여성에 대한 불균형적 영향 등에 깊이 연관됨을 인식하는 것(4항)

⑤핵군축의 윤리적 급박성(5항), 핵무기 사용과 핵실험으로부터 야기되는 해악(6항), 핵실험으로 인한 원주민의 고통(7항)

⑥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항상 일치할 국가 의무(8항)

⑦무력충돌에서 전투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점, 구별의 원칙, 무차별공격의 금지, 비례성의 원칙과 공격의 사전조치, 지나친 상해와 고통을 야기하는 성질을 갖는 무기의 사용금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규칙 등 국제인도법 원칙과 규칙에 기초(9항)

⑧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반한다는 것(10항),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인도성의 원칙과 공

---

35) 동 권고적 의견에서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반한다.”라는 결정의 의미는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의 자위의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사용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제한적 금지라고 할 수 있다. 동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은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반적 조건(특히 국제인도법의 제규칙과 원칙)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조건에 일반적으로 반한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 하에서 자위의 수단으로서 행사되는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이 위법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결론을 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ICJ,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para. 105(2)E).

공양심의 명령에 반한다는 것(11항)

⑨무력의 사용과 그 위협의 금지, 세계 인적·경제적 자원의 균비를 위한 최소한의 전용(12항)

⑩핵무기의 폐기에 관한 1946년 1월 24일자 유엔총회의 결의를 비롯한 추후의 결의(13항), 핵군축의 더딘 진전, 군사개념·안보개념·선언과 정책으로서 핵무기에 관한 계속된 의존, 핵무기의 제조·유지·현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의한 경제적·인적 자원의 낭비(14항)

⑪핵무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금지가 핵무기의 불가역적, 검증 가능한 투명한 폐기를 포함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성취와 유지에 대한 중요한 공헌(15항)

⑫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통제 하에서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에 대한 효과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16항), 신의로서 핵군축을 이끌 의무(17항)

⑬핵무기비확산조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18항)

⑭핵군축과 비확산체제의 중요 부분으로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그것의 검증체제의 중요성(19항)

⑮국제적으로 승인된 비핵지대의 설치와 국제적 또는 지역적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20항), 차별 없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에너지의 연구·생산·이용을 증진시킬 불가분의 권리(21항), 핵군축을 위한 여성의 참여 강화(22항), 평화와 군축 교육의 중요성의 재인식 및 본 조약의 보급(23항)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요청되는 공공양심의 중요성 강조(24항)<sup>36)</sup>

## 2) 기본 의무

‘핵무기금지조약’의 기본 의무로는 각종 금지(동 조약 제1조), 신고(동 조약 제2조), 안전조치(동 조약 제3조), 핵무기의 폐기(동 조약 제4조)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36) Stuart Casey-Maslen, *op.cit.*, pp.64~127.

(1) 각종 금지(동 조약 제1조)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개발·실험·생산·제조·취득·소유 또는 비축이 금지되며,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 또는 그것의 직·간접적 통제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상기 양도의 수령이 금지되며,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이 금지되며, 상기의 금지된 행위에 대한 지원 또는 장려가 금지되며, 그러한 지원 등의 수령이 금지되며,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배치·설비 또는 전개가 금지된다.<sup>37)</sup>

(2) 각종 신고(동 조약 제2조)

각 당사국은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 후 30일 이내(발효 후 개별적으로 비준 또는 가입하는 경우, 당해 개별 국가에 대한 발효 후 30일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아래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그 제출된 모든 신고서를 각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첫째 각 당사국의 동 조약에 대한 발효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소유·보유 또는 통제하였는지에 관한 신고서 그리고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폐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는 자국의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하였는지에 관한 신고서, 둘째 동 조약 제1조 a항에도 불구하고,<sup>38)</sup> 각 당사국이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소유·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지에 관한 신고서, 셋째 동 조약 제1조 g항에도 불구하고,<sup>39)</sup> 자국의 영역 내에 또는 자국의 관할 또는 통제 하의 어떤 장소에 자국 이외의 국가가 소유·보유 또는 통제하는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신고서 등이다.<sup>40)</sup>

(3) 안전조치(동 조약 제3조)

① ‘핵무기금지조약’ 제4조 1항 또는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각 당사국은, 장래 자국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관련 기구들에 방해 받음이 없이, 최소한, 동 조약의 발효 시에 시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37) *Ibid.*, pp.131~173.

38) 동 a항이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개발·실험·생산·제조·취득·소유 또는 비축을 금지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39) 동 g항이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배치·설비 또는 전개를 금지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40) Stuart Casey-Maslen, *op.cit.*, pp.174~179.

한다.

②아직까지 동 조약 제4조 1항 또는 2항이 적용된 적이 없는 당사국으로서 ‘핵무기금지조약’ 제4조 1항 또는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각 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INFCIRC/153)을 체결하여 발효시켜야 한다. 그러한 협정에 대한 교섭은 각 당사국에 대한 본 조약의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그 협정은 각 당사국에 대한 본 조약의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장래에 채택할 추가적 관련 기구의 활동을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동 조약 제4조 1항 또는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각 당사국’이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보유 또는 통제해 보지 않은 국가 또는 핵무기 관련 시설을 폐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는 자국의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해 보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sup>41)</sup>

#### (4) 핵무기의 폐기(동 조약 제4조)

①2017년 7월 7일 이후에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보유 또는 통제했다가 핵무기 관련 시설의 폐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는 자국의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하였던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한 동 조약의 발효 이전에, 자국의 핵무기프로그램의 불가역적 폐기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 제6항(아래⑥)에 따라 고안된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 권한 있는 국제기구는 모든 당사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평화적 핵활동으로부터 나온 신고된 핵물질의 비전용에 대해 그리고 미신고된 핵물질 또는 핵활동의 부존재에 대해 신뢰할 만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조치협정에 대한 교섭은 각 당사국에 대한 동 조약의 발효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안전조치협정은 각 당사국에 대한 동 조약의 발효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장래 자국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관련 기구들에 방해 받음이 없이, 최소한,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핵무기금지조약’ 제1조 a항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각 당사국은, 첫 번째 당사국회의(동 조약 제8

41) *Ibid.*, pp.180~187.

조)에서 결정된 시한 이내에,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폐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는 당사국의 핵무기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된 그리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시간대별 계획에 따라, 그것들을 작동상태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한 동 조약의 발효 후 60일 이내에 기타 당사국들에게 또는 각 당사국이 정한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게 상기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은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교섭되어야 하고, 절차규칙에 따른 승인을 위해 직후에 열리는 당사국회의 또는 재검토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③ ‘핵무기금지조약’ 제4조 2항(상기 ②)을 적용하는 각 당사국은, 평화적 핵활동으로부터 나온 신고된 핵물질의 비전용에 대해 그리고 당해 국가의 비신고된 핵물질 또는 핵활동의 부존재에 대해 신뢰할 만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한 협정의 교섭은 상기 2항에서 언급된 계획의 이행 완료일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협정은 교섭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장래에 자국이 채택하는 어떠한 추가적 관련 기구들의 활동을 침해함이 없이, 최소한,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 항에서 언급된 안전조치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당사국은 본 조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해온 자국의 의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핵무기금지조약’ 제1조 b항과 g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가 소유·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또는 자국의 관할 또는 통제 하의 어떠한 장소에 있는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보유한 각 당사국은, 첫 번째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되는 기한 이전에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무기의 즉각적인 제거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무기 또는 기타 폭발장치의 제거에 근거해서, 각 당사국은 본 조항 하에서 자국이 이행해온 의무에 관한 신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 제4조가 적용되는 각 당사국은, 본 조하에서 수행된 자국의 의무이행과정에 관한 이행시점까지의 보고서를, 각 당사국회의와 각 재검토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당사국은 본 제4조 1항(상기 ①)과 2항(상기 ②) 그리고 3항(상기 ③)에 따른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폐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는 핵무기프

로그래의 불가역적 폐기를 교섭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국제기구 또는 기구들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 조 1항과 2항이 적용되는 그러한 지정이, 각 당사국에 대한 동 조약의 발효 이전에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엔 사무총장은 요청된 모든 결정을 취급할 비상 당사국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sup>42)</sup>

### 3) 기타 의무

‘핵무기금지조약’의 기타 의무로는 국내적 이행조치(제5조), 희생자의 지원 및 환경의 복구(제6조), 국제적 협력 및 지원(제7조), 당사국 회의(제8조), 비용(제9조), 개정(제10조), 분쟁의 해결(제11조), 보편성(제12조), 서명(제13조), 비준·수락·승인 및 가입(제14조), 발효(제15조), 유보(제16조), 기간 및 탈퇴(제17조), 기타 협약과의 관계(제18조), 수탁자(제19조), 원본(제20조) 등이 있는데,<sup>43)</sup> 그 발효와 탈퇴에 관한 내용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핵무기금지조약’ 제15조에서는 5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이후 9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하며, 발효 이후에 비준·수락·승인·가입하는 국가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를 기탁한 후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약 제17조에서는 기간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간은 무제한이며, 탈퇴권을 인정하고 있다. 탈퇴는 해당 국가의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인정되는데, 기탁자에게 탈퇴의 사실을 통고해야 하고, 그 통고에는 발생한 예외적 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어야 한다. 탈퇴의 효력은 기탁자가 탈퇴의 통고를 받은 후 12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 IV. ‘핵무기금지조약’의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무기금지조약’은 비교적 짧은 협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생물무기협약이나 화학무기협약과 같이 단일의 무기류에 대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달성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

42) *Ibid.*, pp.188~201.

43) *Ibid.*, pp.202~261.

다. 또한 이것은 인도주의가 이룬 승리의 징표이기도 하다.<sup>44)</sup>

그러나 ‘핵무기금지조약’이 상기와 같은 의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효의 요건을 조속히 충족하여야 하며, 핵무기보유국과 그 동맹국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보다 포괄적 내용을 규제하여야 하며, 검증과 관련한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현재의 핵비확산체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sup>45)</sup>

## 1. 미발효

‘핵무기금지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sup>46)</sup> 동 조약이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후 약 14개월이나 흐른 2019년 12월 현재 비준국의 수는 34개국(총 80개국이 서명함)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어떠한 핵무기보유국도 서명조차하지 않은 상태이다.<sup>47)</sup>

핵무기보유국과 그 동맹국들이 ‘핵무기금지조약’의 협상 단계부터 반대의 입장을 취하여 왔고 또한 그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경우에서와 같이, 향후 ‘핵무기금지조약’이 관습국제법화 될 것인가 하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경우 2019년 12월 현재 발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 비준국의 수가 168개국(총 184개국이 서명함)에 이른다는 점에서,<sup>48)</sup> 동 조약이 관습국제법화 되었는지에 관해 의견의 대립이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검토하면, 향후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금지조약’의 서명국의 수가 일반적 내지 보편적 조약의 수준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에, 동 조약의 관습국제법으로의 성립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면, 관습국제법의 실체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실질적

44) 이용호, 「현대 국제군축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9, 92쪽 ; Shannon N. Kile, *op.cit.*, p.307.

45) *Ibid.*, p.314.

46) 동 조약의 발효 요건은 2017년 5월 22일자의 첫 번째 초안에서는 40개국의 비준서 기탁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카자흐스탄의 요청에 의해 동년 6월 27일자의 두 번째 초안부터는 50개국으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다(Stuart Casey-Maslen, *op.cit.*, p.248).

47) <http://disarmament.un.org/treaties/t/tpnw> (검색일 : 2019.12.15).

48) <http://disarmament.un.org/treaties/t/ctbt> (검색일 : 2019.12.15).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핵무기와 관련된 1996년의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핵무기의 위법성에 관한 찬반 양론이 국제공동체 내에서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확인이 존재한다고 결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sup>49)</sup>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 판단해 보면, 향후 많은 국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더라도, 다수의 핵무기보유국과 그 동맹국이 서명조차하지 않는다면, 동 조약이 향후 관습국제법으로 정립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에 해상국가의 관례와 견해가 특별히 영향력을 끼쳤듯이, 핵무기와 관련한 관습국제법의 형성에는 핵무기보유국의 의사가 영향력을 가진다는 논리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다.<sup>50)</sup>

## 2. 모든 핵무기보유국의 불참

오늘날 핵무기보유국은 9개국인데, 미국·러시아·영국·중국·프랑스 등 핵무기비확산조약상의 5대 보유국과 북한·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보유국을 지칭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핵무기보유국들은 핵무기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보유국 가운데 어느 국가도 '핵무기금지조약'의 협상 과정에조차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동 조약의 발효 및 기타의 모든 이행 과정에서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통적으로 핵무기보유국들은 핵무기의 사용조차 합법적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 근거는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명문 규정의 결여,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핵억지정책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승인, 핵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국가 권리론 등이었다.<sup>51)</sup>

하물며 사용뿐 아니라 기타의 다양한 영역까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쩌면 핵무기보유국의 협력을 기대조차하기

49) ICJ, *op.cit.*, para. 67.

50) Malcom N. Shaw,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Law",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Law*, St. Martin's Press, 1987, p.2.

51) Eric David, "The Opinion of the ICJ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316, ICRC Publication, 1997, pp.22~24.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표적인 핵군축조약에 대한 핵무기보유국의 참여 정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각 보유국마다 약간의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경우 5대 강대국은 모두 비준한 반면,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은 서명조차하지 않은 상태이며, 북한의 경우에는 탈퇴 선언과 그 이후의 탈퇴에 대한 유보 등을 반복한 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52)</sup>

둘째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경우 러시아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비준한 상태이며, 미국·중국·북한·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sup>53)</sup>

끝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의 경우, 9개 핵무기보유국 모두가 협상 과정에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향후 동 조약에 가입할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sup>54)</sup>

이상과 같은 비교를 통해,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핵무기보유국들의 속내를 쉽게 읽을 수 있다. 핵무기보유국들이 동 조약에 대해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기류를 엿볼 수 있는데, 그 만큼 동 조약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핵무기보유국이 ‘핵무기금지조약’에 향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야기된다. 즉 동 조약에 핵무기보유국이 협상 단계부터 불참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핵무기보유국이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동 조약 체제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sup>55)</sup>

### 3. 조약 내용의 미비

‘핵무기금지조약’에서는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에 대한 금지 범위를 ‘개발·실험·생산·제조·취득·소유 또는 비축’ 그리고 ‘양도와 양도의 수령, 사용과 그 위협, 금지된 행위에 대한 지원 또는 장려, 그러한 지원 등의 수령, 배치·설비 또는 전개’로 한정하고 있다.

52) <http://disarmament.un.org/treaties/t/npt> (검색일 : 2019.12.15).

53) <http://disarmament.un.org/treaties/t/ctbt> (검색일 : 2019.12.15).

54) Shannon N. Kile, *op.cit.*, p.318.

55) *Ibid.*

이처럼 동 조약의 금지범위를 둘러싸고, 통과(수송)나 핵무기를 통한 자금조달행위(매매) 등에 대한 금지가 추가될 필요가 있고,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실험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 과정에서 핵실험과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결국 갑론을박이 있던 후에 조항이 변경된 형태로 수용되기도 하였다.<sup>56)</sup>

한편 생물무기협약상의 금지범위는 생물무기에 대한 개발·생산·비축에 한정하고 있고, 그것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학무기협약상의 금지범위는 화학무기에 대한 개발·생산·취득·비축·보유·양도에 한정하고 있고, 그것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sup>57)</sup>

이처럼 단일의 무기류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상기의 3개 조약은 각각 상이한 금지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틈이 없는’ 금지를 통해 해당 조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

#### 4. 검증의 문제

오늘날 대부분의 군축조약에서는 검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증이란 특정 조약의 당사국들이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과정이라고 정의된다.<sup>58)</sup> 따라서 군축조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당해 군축조약에서 어떤 검증체제를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핵무기금지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검증 수단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실시하는 안전조치(Safeguards)제도이다. 동 조약의 채택 과정에서 독자적인 검증체제를 도입할 것인지 또는 ‘강화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추가의정서’까지도 안전조치협정의 협상 시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sup>59)</sup> 결국 동 조약에서 독자적 검증체제와 강화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였음은 아쉬운 부분이다.

56) *Ibid.*, p.312.

57) 이용호, 앞의 책, 302~306쪽.

58) UN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The United Nations Disarmament Yearbook 1990*, vol.15, UN Publication, 1991, p.60.

59) Shannon N. Kile, *op.cit.*, p.312.

또한 국내검증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또는 강제불시사찰(Challenge Inspection) 등과 같은 검증수단을 도입하지 않은 점도 효과적 검증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핵무기금지조약’에서는 안전조치제도만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과 안전조치제도 자체도 아래와 같은 일반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약상의 검증체제는 이중의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제도가 갖는 한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핵물질의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과의 관계에서 동 안전조치로서는 전용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즉 조기발견의 한계성이다.

둘째 비밀누설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셋째 안전조치의무의 비준수성에 관한 문제인데, 비준수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위반을 방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넷째 안전조치는 단지 신고 되고 통지된 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안전조치제도만으로써는 미래의 국가의 의도 및 결정을 예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sup>60)</sup>

## 5. 포럼쇼핑의 문제

‘핵무기금지조약’이 채택됨으로써 핵비확산체제가 동 조약과 핵무기비확산조약으로 양분될 수 있고, 그 결과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이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금지조약’의 출현으로 인해, 개개 국가가 자국에게 보다 유리한 하나의 조약체제에만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책무를 다했다고 하는 데도 즉 쇼핑포럼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결국 현존하는 핵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sup>61)</sup>

---

60) Hans Blix, “The Role of the IAEA and Existing NPT Regime”, *Nuclear War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ir Consequences*, Oxford Univ. Press, 1986, p.59 ; Mohamed ElBaradei, “The Role of IAEA, Safeguards in the Evolution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 Some Lessons for Other Arms Control Measures”, *The International Law of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UN Publication, 1991, p.107.

61) Shannon N. Kile, *op.cit.*, p.317.

## V. 결론

이상과 같이 ‘핵무기금지조약’의 성립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에 관한 포괄적 금지를 달성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채택은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류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발효, 핵무기보유국과 그 동맹국의 불참, 내용상의 미비, 검증체제의 미비, 핵비확산체제의 분열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발효의 요건을 조속히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핵무기보유국과 그 동맹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적 협상이 요구되며, 내용상 및 검증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사국회의 또는 재검토회의에서의 재논의가 요청되며, 현재의 핵비확산체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현재의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으로 나누어진 채 나타나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간의 분열을 조정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 핵무기보유국 상호간, 그리고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에 국가 간 신뢰가 형성된다면, 핵무기보유국들은 핵무기금지조약을 둘러싼 재협상에 참여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각종 비정부간기구의 개별적 또는 연대적 노력이 더 보편적이고 강하게 전개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핵무기와 관련한 대중운동을 통해 핵무기의 해악과 불법성을 의식화시킴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의 당위성에 관한 미래 세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러한 대중운동을 통해 핵군축이 갖는 인도주의적 정신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핵군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가 승인하여 온 ‘역지이론’ 등과 같은 기존의 핵무기정책에 관한 중요성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핵무기

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상기와 같은 핵무기정책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난 74년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아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미래에도 핵무기의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핵무기의 금박성과 참혹성을 깊이 인식하고, 핵무기의 포괄적 통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19.12.03. / 심사완료일 : 2019.12.12. / 게재확정일 : 2019.12.16.

[참고문헌]

- 김부찬, 「국제법 특강」, 보고사, 2014.
- 이민호, 「무력분쟁과 국제법」, 연경문화사, 2008.
- 이용호, 「현대 국제군축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9.
- , 「전쟁과 평화의 법」,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 정운장, 「국제인도법」,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4.
-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9.
- Casey-Maslen, Stuart,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 A Commentary*, Oxford Univ. Press, 2019.
- ICJ,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19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 Press, 2019.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18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 Press, 2018.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17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 Press, 2017.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16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 Press, 2016.
- UN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The United Nations Disarmament Yearbook 1990*, vol.15, UN Publication, 1991.
- Blix, Hans, “The Role of the IAEA and Existing NPT Regime”, *Nuclear War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ir Consequences*, Oxford Univ. Press, 1986.
- David, Eric, “The Opinion of the ICJ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316, ICRC Publication, 1997.
- ElBaradei, Mohamed, “The Role of IAEA, Safeguards in the Evolution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 Some Lessons for Other Arms Control Measures”, *The International Law of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UN Publication, 1991.

Kile, Shannon N.,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SIPRI Yearbook 2018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 Press, 2018.

Shaw, Malcom N.,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Law”,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Law*, St. Martin’s Press, 1987.

<http://disarmament.un.org/treaties/t/tpnw>

<http://disarmament.un.org/treaties/t/ctbt>

<http://disarmament.un.org/treaties/t/npt>

[국문초록]

##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

이 용 호\*

2017년의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은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은 미발효, 핵무기보유국의 불참, 조약 내용의 미비, 검증 규정의 미비, 포럼쇼핑의 문제 등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분석을 통해 향후 동 조약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 하에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동 조약의 성립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동 조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동 조약이 안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넷째 동 조약의 나아갈 방향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즉 발효의 요건을 조속히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핵무기보유국과 그 동맹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적 협상이 요구되며, 내용상 및 검증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사국회의 또는 재검토회의에서의 재논의가 요청되며, 현재의 핵비확산체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현재의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으로 나누어진 체 나타나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간의 분열을 조정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 핵무기보유국 상호간, 그리고

---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에 국가 간 신뢰가 형성된다면, 핵무기보유국들은 ‘핵무기금지조약’을 둘러싼 재협상에 참여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각종 비정부간기구(NGO)의 개별적 또는 연대적 노력이 더 보편적이고 강하게 전개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핵무기와 관련한 대중운동을 통해 핵무기의 해악과 불법성을 의식화시킴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의 당위성에 관한 미래 세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러한 대중운동을 통해 핵군축이 갖는 인도주의적 정신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핵군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가 승인하여 온 ‘억지이론’ 등과 같은 기존의 핵무기정책에 관한 중요성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상기와 같은 핵무기정책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난 74년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아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미래에도 핵무기의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핵무기의 급박성과 참혹성을 깊이 인식하고, 핵무기의 포괄적 통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핵무기금지조약’,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포괄적 군축,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관한 정부 간 국제회의, 인도주의의 승리의 징표

[Abstract]

## Limits and Main Contents of the TPNW

Lee, Yong-H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2017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first treaty calling for a comprehensive ban on nuclear weapons.

Nevertheless, the Treaty faces many limits, including not to take effect, no participation of nuclear weapons states, lack of treaty content, insufficiency of verification rules, and problems with forum shopping.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aspects are examined with the goal of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trea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imits of the Treaty. First,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eaty is described. Second, the main contents of the Treaty are summarized. Third, the limits of the Treaty are analyzed. Fourth, the direction of the Treaty would be proposed in the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 review,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reached, which are follows : Efforts should be made to meet the conditions of entry into force as soon as possible, and further negotiations will be required to draw support from nuclear weapons states and their allies, and second-discussed at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r review conference meetings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in content and deficiencies in verification regulations. Also, efforts should be made to harmonize with the current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Foremost, however, healing the conflicts and divisions that emerge as being divided between the present nuclear and non-nuclear weapon states comes first. In other words, efforts should be made to coordinate the division between nuclear weapons states and non-nuclear weapons states and bring

---

\*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them together. There are some suggestions for doing this below.

First,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rust between nuclear weapons states and non-nuclear weapons states, among nuclear weapons states and among non-nuclear weapons states.

Second, the individual or solidarity efforts of vari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create a ‘nuclear-free world’ are called for a more universal and stronger development.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gradually reduce the importance of existing nuclear weapons policies, such as ‘deterrence theory’, which has been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nally, based on the historical fact that nuclear weapons have not been used for the past 74 years, we should not judge that there will be no threat of nuclear weapons in the future.

Key words :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General and Completely Disarmament, Comprehensive Disarmamen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Symbol of Victory of Humanity

